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731-01

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서

2013. 2.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731-01

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서

2013. 2.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총 목 차

-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
..... 1

- ◆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
..... 129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



목 차

공통 분야 사업시행지침	5
원에·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27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49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71
별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91
별지 서식	105

공통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지침서(공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안용덕 사무관 유원상	044-201-1711 044-201-1719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 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가격 지지율(%)	90	-	-	-	'13.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평균가격+(지급단가×조정계수)]/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7
합계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국고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2.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3)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 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①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frac{\text{협정 상대국 수입량}}{\text{국내생산량} + \text{총수입량} - \text{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이행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가.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라.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4.03.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8.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9.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6.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7.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수산물에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 조정 계수

가. 산출 기준

① 농업등 :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생산면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2. 농작물생산조사 품목이 아닌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 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3.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② 어업등 : 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③ 축산업 :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지급 단가 : (기준 가격*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 90%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 가격 조사 기준 : <별표 1> 참고

다. 조정 계수(농업등)

$$\text{조정계수} = (\text{지급 가능 보조액} / \text{지급 신청 총액}) \times \text{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지급 가능 보조액 : '13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 신청 총액 : 지원 대상 품목의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라. 조정 계수(어업등) : 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4) 지원 한도액

※ 지원 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예)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3년 12월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3) 신청 기간 : 2013. 1. 1. ~ 2013. 2. 15.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 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 (3) 조사·분석 결과를 2013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농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 지급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관외생산지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지를 포함)
-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지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지가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기도 안성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충청남도에 대하여 각각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같음한다.

나. (2012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2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면적,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사무소 등 농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15.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2) 조정 계수 산출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지급 신청 총액과 2013년 AMS 잔여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조정 계수를 산출
- (3) 심의 요청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위원회는 농림수산물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1) 자금 요청 기간 : 2013. 11. 8.까지
-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통보한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3. 11. 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물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직불금 지급**

- (1) 지급 시기 : 2013. 12월
-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2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등 중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4) 지급 상한 :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어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 및 어업 법인은 5,000만원
-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 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지급된 경우
 -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9. 성과 측정 단계

-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 비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text{12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 / \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직불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10. 사업 평가

-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지원 대상 품목 가격지지율이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text{12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 / \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14. 1. 1. ~ 2014. 4. 30.

사업 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13.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조사·분석(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②사업신청	(13.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어업인등) ·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3.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생산지·농어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어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④조정계수 산정	(13.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품목별 조정 계수 분석(농림수산식품부) · 조정 계수 심의·의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조정 계수 통보(농식품부→시·도)
↓		
⑤자금 요청 및 배정	(1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 자금 배정 요청(시·도→농식품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 자금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		
⑥직불금 지급	(1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원에 · 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지침서(원예·특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총괄)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정락	044-201-2251 044-201-2254
	(과수)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정락	044-201-2251 044-201-2254
	(채소)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특작)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황신구	044-201-2231 044-201-2240
	(화훼)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휴현	044-201-2251 044-201-2261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 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가격 지지율(%)	90	-	-	-	'13.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평균가격+(지급단가×조정계수))/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7
합 계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국 고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2.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3)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 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①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감귤·포도의 수입량 산출시점 : 감귤(노지) 10~3월, 감귤(시설) 6~10월, 만감류 1~5월, 포도(노지) 7~10월, 포도(시설) 3~6월

-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frac{\text{협정 상대국 수입량}}{\text{국내생산량} + \text{총수입량} - \text{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이행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가.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라.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4.03.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8.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9.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6.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7.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수산물에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 조정 계수

가. 산출 기준

① 과수품목 제외(채소·특작·화훼등) :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생산면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2. 농작물생산조사 품목이 아닌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 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3.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② 과수품목* : 지원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과수의 범위 : 감귤, 포도, 키위, 체리

** 지원대상면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과 표준 재식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지원대상면적 = 과원 실제 면적 × 실제재식주수/대상품목의 표준재식주수

- 1) 지원대상면적은 과원의 실제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은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출)
- 2)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포 도	100주/10a	울타리식
	66주/10a	평덕식
감 귤	83주/10a	소식재배
	150주/10a	밀식재배
키 위	22주/10a	소식재배
	40주/10a	밀식재배
체 리	27주/10a	소식재배
	100주/10a	밀식재배
- 예1) 50주가 재식된 2,000평 밀식재배 체리 과원 : 지원대상면적(1,000평) = 실제면적(2,000평) × 실제재식주수(50)/표준재식주수(100)
- 예2) 100주가 재식된 1,500평 평덕식 포도 과원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아 실제면적 1,50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3)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다만, 감귤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 중인 감귤재배관리시스템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재식주수를 확인하고,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등의 경우는 현장 확인 방법을 활용한다.

*** 전국평균생산량 : 과수품목과 동일

나. 지급 단가 : (기준 가격*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 90%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 가격 조사 기준 : <별표 1> 참고

다. 조정 계수(농업등)

$$\text{조정계수} = (\text{지급 가능 보조액} / \text{지급 신청 총액}) \times \text{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 지급 가능 보조액 : '13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지급 신청 총액 : 지원 대상 품목의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총액
- * 수입기여도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4) 지원 한도액

※ 지원 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예)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3년 12월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3) 신청 기간 : 2013. 1. 1. ~ 2013. 2. 15.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 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 (3) 조사·분석 결과를 2013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농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 지급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관외생산지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지를 포함)
-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지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지가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기도 안성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충청남도에 대하여 각각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같음한다.

나. (2012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등

나.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기타 서류〉

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2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면적,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사무소 등 농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15.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2) 조정 계수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급 신청 총액과 2013년 AMS 잔여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조정 계수를 산출
- (3) 심의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1) 자금 요청 기간 : 2013. 11. 8.까지
-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3. 11. 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1) 지급 시기 : 2013. 12월
-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2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등 중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4) 지급 상한 :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어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 및 어업 법인은 5,000만원
-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 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지급된 경우
 -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9. 성과 측정 단계

-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 비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직불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10. 사업 평가

-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지원 대상 품목 가격지지율이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14. 1. 1. ~ 2014. 4. 30.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지침서(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총괄) 축산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홍인기	044-201-2311 044-201-2315
	(한·육우)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양돈·양봉)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236
	(낙농)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40
	(닭·오리)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8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 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가격 지지율(%)	90	-	-	-	'13.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평균가격+(지급단가×조정계수)]/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7
합 계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국 고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2.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3)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 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①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frac{\text{협정 상대국 수입량}}{\text{국내생산량} + \text{총수입량} - \text{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이행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가.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라.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4.03.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8.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9.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6.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7.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수산물에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

$\text{산출 기준} \times \text{지급 단가} \times \text{조정 계수}$
--

가. 산출 기준

구 분	산출기준
일반기준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낙 농	납유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산란계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양 봉	사육 봉군수 × 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출하 마릿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조합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
- * 한우 송아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10개월령 이전에 출하된 개체 중 최초 출하된 개체에 한하여 출하 마릿수로 인정
- * 납유량 : 2012년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집유주체(낙농진흥회 등)에 납품한 원유물량으로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 양봉의 사육 봉군수는 지자체장이 농가별로 집계한 공식 통계결과 등으로 확인(1년에 2번 이상 집계한 경우 평균값으로 적용)
- * 사육 봉군수 : 여왕벌 1마리와 일벌 20,000마리(소비 5매) 이상인 봉군을 하나의 봉군으로 인정

나. 지급 단가 : (기준 가격*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 90%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 가격 조사 기준 : <별표 1> 참고

다. 조정 계수(농업등)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 / 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 지급 가능 보조액 : '13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지급 신청 총액 : 지원 대상 품목의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총액
- * 수입기여도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4) 지원 한도액

※ 지원 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예)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3년 12월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3) 신청 기간 : 2013. 1. 1. ~ 2013. 2. 15.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 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 (3) 조사·분석 결과를 2013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농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 지급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관외생산지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지를 포함)
-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지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지가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기도 안성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충청남도에 대하여 각각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한다.

나. (2012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조합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서류, 농축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조합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서류, 농축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축사 또는 지주의 확인서, 축사 또는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축사 또는 토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2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면적,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한우인 경우 동일 개체의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품목이 송아지인 경우 신청인이 최초 지급자(송아지생산 농가)인지 여부를 확인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 ④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개체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조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확인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사무소 등 농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15.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2) 조정 계수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급 신청 총액과 2013년 AMS 잔여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조정 계수를 산출
- (3) 심의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1) 자금 요청 기간 : 2013. 11. 8.까지
-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3. 11. 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1) 지급 시기 : 2013. 12월
-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2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등 중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 한우 및 한우송아지의 경우 동일 개체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 지급 여부 및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서의 보조금 기 지원여부를 고려 후 직불금 차감 지급

- 한우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은 한우(큰소) 피해보전직불금
: 보조액 = (당해 연도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 (기 지급받은 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전금이 지급된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 보조액 = (당해 연도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 (기 지급받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보전금)

- (4) 지급 상한 :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어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 및 어업 법인은 5,000만원
-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한우 송아지 품목은 직불금 지급 내역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 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9. 성과 측정 단계

-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 비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직불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10. 사업 평가

-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지원 대상 품목 가격지지율이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14. 1. 1. ~ 2014. 4. 30.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지침서(수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과 장 양동엽 서기관 권오정	044-201-2851 044-201-2859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 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가격 지지율(%)	90	-	-	-	'13.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평균가격+(지급단가×조정계수)]/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7
합 계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국 고	199,800	25,000	60,000	60,000	240,00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2.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3)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 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①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frac{\text{협정 상대국 수입량}}{\text{국내생산량} + \text{총수입량} - \text{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예)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이행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III.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 어업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의 원양어업자, 「내수면 어업법」에 규정된 ‘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4.03.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6.08.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09.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6.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1.07.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수산물에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2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지원 기준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 조정 계수

가. 산출 기준

- ①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②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 산출된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 단가 : (기준 가격*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 90%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수산물 평균 가격의 조사 방법 : <별표 1> 참고

다. 조정 계수(어업) : 수입기여도

* 수입기여도 : 지원 대상 품목의 '12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4) 지원 한도액

※ 지원 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예)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3년 12월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3) 신청 기간 : 2013. 1. 1. ~ 2013. 2. 15.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 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 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 (3) 조사·분석 결과를 2013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대상 품목이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 지급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4 서식)

-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 전라남도·경상남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한다.

나. (2012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수협이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외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 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③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2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어업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면적,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4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과 관외생산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5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사무소 등 농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15.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3. 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2) 조정 계수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급 신청 총액과 2013년 AMS 잔여분, 지원 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조정 계수를 산출
- (3) 심의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1) 자금 요청 기간 : 2013. 11. 8.까지
-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3. 11. 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1) 지급 시기 : 2013. 12월
-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2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4) 지급 상한 : 지원 대상 품목별로 농어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5,000만원

-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 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9. 성과 측정 단계

-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 비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직불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10. 사업 평가

- 기준 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지원 대상 품목 가격지지율이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frac{[12\text{년 평균가격} + (\text{지급단가} \times \text{조정계수})]}{\text{기준가격}}$	- 2013.12월 -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14. 1. 1. ~ 2014. 4. 30.

별 표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1. 공통 사업 지침 적용 품목(16개) : 곡류 · 서류 · 임산물 등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보리	1003001000	맥주맥(malting barley)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003009010	겉보리	1	
	1003009020	쌀보리	1	
	1003009090	보리(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이외 기타)	1	
	1003901000	맥주맥(기타)	1	
	1003902000	겉보리(기타)	1	
	1003903000	쌀보리(기타)	1	
	1003909000	보리 기타(기타)	1	
	1102901000	보리가루	1	
	1103191000	보리(분쇄물·조분)	1	
	1103203000	펠리트(보리의것)	1	
	1104192000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1	
	1104292000	가공곡물(보리의 것)	1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1	
	1107201000	맥아(훈연한 것)	1	
1107209000	맥아(기타/볶은 것)	1		
2101301000	보리(볶은 것)	1		
밀	1001100000	밀(듀우럼종)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001190000	듀럼종(기타)	1	
	1001901000	밀(메슬린)	1	
	1001909030	밀(제분용)	1	
	1001909090	밀(기타)	1	
	1001992010	메슬린(제분용)	1	
	1001992090	메슬린 외 기타(제분용)	1	
	1001999010	메슬린(기타)	1	
	1001999090	메슬린 외 기타(기타)	1	
	1101001000	밀가루	1	
	1101002000	메슬린 가루	1	
	1103110000	밀(분쇄물·조분)	1	
	1103201000	펠리트(밀의것)	1	
	1904300000	불거밀	1	
옥수수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1	
	1102200000	옥수수가루	1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조분)	1	
	1104230000	옥수수(가공곡물)	1	
조	1008201090	조(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008209000	밀리트(기타)	1	
	1008291000	조(기타)	1	
	1008299000	밀리트 기타(기타)	1	
	1008400000	포니오(디지타리아종)	1	
	1008500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1	
	1008600000	라이밀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수수	1007009000	수수(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007900000	수수(기타)	1	
율무	1104291000	율무(가공곡물)	1	
감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0710100000	감자(냉동)	0.8	
	0712902093	감자(건조)	0.25	
	1105100000	감자(분, 조분)	0.25	
	1105200000	감자(플레이크, 합착 및 펠리트)	1	
	2004100000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0.8	
	2005201000	감자(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조제 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209000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고구마	0714201000	고구마(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0714202000	고구마(건조)	1	
	0714203000	고구마(냉장)	1	
	0714204000	고구마(냉동)	1	
	0714209000	고구마(신선, 건조 이외 기타)	1	
대두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1201009090	대두(기타)	1	
	1201903000	대두(콩나물용)(기타)	1	
	1201909000	대두 기타(기타)	1	
	1208100000	대두의 분과 조분	1	
녹두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2005511000	녹두(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591000	녹두(탈각한 것 이외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팥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 물량)
	2005512000	팥(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592000	팥(탈각한 것 이외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호도	0802310000	호도(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1	임산물유통정보 시스템 조사가격 * 산지기준: 생산지 * 등급기준 ①호도: 피호도 상 품(上品) ②팥: 상품(上品) ③팥: 깎팥 상품(上品) ④은행: 피은행 상 품(上品) ⑤대추: 건대추 상 품(上品) * 단위: 원/kg
	0802320000	호도(탈각한 것/신선, 건조)	2.19	
밤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2	
	0802410000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하지 아니한 것)	1	
	0802420000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한 것)	2	
	0811901000	밤(냉동)	1.4	
	2006001000	밤(마롱글라세)	1	
	2008191000	밤(기타 조제, 저장처리한 것)	1.1	
잣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1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 건조)	4.31	
	0811903000	잣(냉동)	1	
은행	0802902010	은행(탈각하지 않은 것/신선, 건조)	1	
	0802902020	은행(탈각한 것/신선, 건조)	1.38	
대추	0810903000	대추(신선)	1	
	0811902000	대추(냉동)	0.96	
	0813402000	대추(건조)	1.58	

2. 축산 사업 지침 적용 품목(9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쇠고기 (한우)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축산물품질 평가원 *전국경매가격 (한우평균가 격의 농가 수취가격) *단위:천 원 /600kg, 마리 *등급 무 관, 등외·결 함 제외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쇠고기 (육우)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축산물품질 평가원 *육우 전국 평균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단위:천 원 /600kg, 마리 *등급 무 관, 등외·결 함 제외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쇠고기 (한우송아지)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농협중앙회 *산지 가격 (6~7개월령) *단위 : 천원 /마리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돼지고기	020311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020312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1	
020319100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1	
020319900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1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1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1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1	
0206300000		돼지고기(식용설육/신선, 냉장)	1	
02064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491000		돼지고기(식용설육/족/냉동)	1	
0206499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냉동)	1	
0209001000		돼지비계(기름빼지않은 것/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09100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1	
0210110000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살/절단/뼈있는것/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120000		돼지고기(복부살/절단/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190000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 복부살제의 기타/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991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닭고기	0207111000	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1	농협중앙회 *산지가격(육 계) *단위:원/kg
	020711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1	
	0207121000	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1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1	
	0207131010	닭다리(냉장)	1	
	0207131020	닭가슴(냉장)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0207131030	닭날개(냉장)	1	
	0207131090	닭기타절단육(냉장)	1	
	0207132010	닭간장(냉장)	1	
	0207132090	닭기타 설육(냉장)	1	
	0207141010	닭다리(냉동)	1	
	0207141020	닭가슴(냉동)	1	
	0207141030	닭날개(냉동)	1	
	0207141090	닭기타절단육(냉동)	1	
	0207142010	닭간장(냉동)	1	
	0207142090	닭(기타설육/냉동)	1	
오리고기	1602399000	가금류의 육(칠면조고기 이외 기타/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1	한국 오리협회 *산지가격(생 체오리) *단위:원/3kg
	0207410000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20000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30000	오리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1000	오리 절단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2010	오리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2090	오리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51000	오리 절단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52010	오리 간(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52090	오리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10991030	가금류의 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	
	0210999020	기타 가금류의 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	
우유	0401100000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이하)	1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단위:원/ℓ
	0401200000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초과 0.06이하)	1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이하)	12.8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12.8	
	0402109000	분유기타(감미 첨가)	12.8	
	0402211000	전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초과)	8.2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8.2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8.2	
	0406101010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1	
	0406901000	치즈(기타/체더 치즈)	11	
계란	0407009000	조란(껍질 붙은 것/신선한 것 이외 기타)	1	농협중앙회 *산지가격 (계란) *단위:원/특란 10개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기타의 신선란)	1	
	040729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외 기타(기타의 신선란)	1	
	040891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1	
	0408991000	조란(닭의 것)	1	
꿀	0409000000	천연꿀	1	한국양봉농협 *벌꿀 평균수 매가격 *단위:원/288kg
	1702901000	인조꿀	1	

3. 원예·특작 사업 지침 적용 품목(17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참깨	1207400000	참깨	1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가격정보통계 (KAMIS)
체리	0809200000	버찌(신선)	1	이행지원센터 (KREI)
	0809210000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신선)	1	
	0809290000	버찌 기타(신선)	1	
	0812100000	버찌(일시저장)	1	
키위	0810500000	키위푸르트(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감귤(노지)	0805100000	오렌지(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노지온주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감귤(시설)	0805100000	오렌지(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하우스온주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만감류	0805100000	오렌지(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한라봉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 기타/신선, 건조)	1	
포도(노지)	0806100000	포도(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7 ~ 10월 출하 물량 기준
	0806200000	포도(건조)	0.09	
포도(시설)	0806100000	포도(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3 ~ 6월 출하 물량 기준
	0806200000	포도(건조)	0.09	
상치	0705190000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신선, 냉장)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당근	0706101000	당근(신선, 냉장)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710804000	당근(냉동)	0.85	
	0711904000	당근(일시저장)	1	
	0712902040	당근(건조)	0.25	
오이	0707000000	오이류(신선, 냉장)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	0.75	
	2001100000	오이류(식초, 초산 조제)	0.65	
멜론	0807190000	멜론(기타/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딸기	0810100000	초분류 딸기(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811100000	초분류 딸기(냉동)	0.85	
	0812901000	초분류 딸기(일시저장처리)	0.75	
양파	0703101000	양파(신선, 냉장)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710801000	양파(냉동)	0.85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0.85	
	0712200000	양파(건조)	0.072	
	2001909070	양파(조제 저장처리)	0.85	
카네이션	0602901020	카네이션	1	양재 화훼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603120000	카네이션(절화/신선)	1	
선인장	0602901060	선인장류(산식물)	1	양재 화훼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수삼	1211201110	수삼(산양삼)	1	한국인삼공사 *수매공시가격 기준
	1211201190	수삼(기타)	1	
	1211201210	백삼	0.26	
	1211201290	백삼(기타)	0.26	
	1211201310	홍삼	0.26	
	1211201390	홍삼(기타)	0.26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	

4. 수산 사업 지침 적용 품목(49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대응 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가오리	0303799096	가오리(냉동)	1	어업생산 동향조사
가자미	0302220000	가자미(신선,냉장)	1	
	0303320000	가자미(냉동)	1	
	0303390000	넙치류기타(냉동)	1	
	0304192010	가자미의것(피레트)-신냉	0.3	
	0304192020	가자미의것(연육)-신냉	0.3	
	0304192090	가자미의것(피레트,연육이외기타)-신냉	1	
	0304294000	가자미의것,피레트(냉동)	0.3	
	갈치	0302693000	갈치(신선,냉장)	
0303793000		갈치(냉동)	1	
0305693000		갈치(염장,염수장)	0.8	
고등어	0302640000	고등어(신선,냉장)	1	
	0303740000	고등어(냉동)	1	
	0305695000	고등어(염장,염수장)	0.8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59000	고등어(통조림외조제품)	0.2	
골뱅이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넣은것)	0.17	
	1605902020	골뱅이(훈제)	0.15	
	1605909030	골뱅이(기타조제)	0.3	
까나리	0303799097	까나리(냉동)	1	
	0305597000	까나리(건조)	0.24	
꽁치	0302698000	꽁치(학꽁치포함(신선,냉장))	1	
	0303798000	꽁치(학꽁치포함(냉동))	1	
	0305698000	꽁치(염장,염수장)	0.8	
	1604191010	꽁치(밀폐용기에넣은것)	0.65	
꽃게	0306143000	꽃게(냉동)	1	
	0306241010	꽃게(산것,신선,냉장)	1	
낙지	0307511000	낙지,산것신선또는냉장	1	
	0307591020	낙지(냉동)	1	
넙치	0302210000	넙치(신선,냉장)	1	
	0302290000	넙치류기타(신선,냉장)	1	
	0303310000	넙치(냉동)	1	
노래미(활어)	0301999091	노래미(활어)	1	
농어	0303770000	농어(냉동)	1	
농어(활어)	0301999051	농어,치어(양식용한정)활어	1	
	0301999059	농어,기타,활어	1	
다랑어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활어	1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활어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대응 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0302310000	날개다랑어또는긴지느러미다랑어(신선,냉장)	1	
	0302320000	황다랭이(신선,냉장)	1	
	0302330000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신선,냉장)	1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냉장)	1	
	0302350000	참다랑어(신선,냉장)	1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신선,냉장)	1	
	0302390000	다랑어류기타(신선,냉장)	1	
	0303410000	날개다랑어,긴지느러미다랑어(냉동)	1	
	0303420000	황다랑어(냉동)	1	
	0303430000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우(냉동)	1	
	0303440000	눈다랑어(냉동)	1	
	0303450000	참다랑어(냉동)	1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냉동)	1	
	0303490000	다랑어류기타(냉동)	1	
	0304193010	참다랑어의젓(신냉,피레트)	0.3	
	0304193020	참다랑어의젓(연육)-신냉	0.3	
	0304193090	참다랑어의젓(기타)-신냉	1	
	0304295000	참다랑어의젓,피레트(냉동)	0.3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0.35	
	1604141012	다랑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41021	가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	0.37	
	1604141022	가다랑어(보일드한것(밀폐용기	0.37	
	1604141029	가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41031	버니토우(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0.35	
	1604141032	버니토우(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41039	버니토우(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0.37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0.2	
대게	0306142000	왕게(냉동)	1	
	0306241020	대게(산것,신선,냉장)	1	
대구	0302500000	대구(신선,냉장)	1	
	0303520000	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냉동	1	
	0304293000	대구의젓,피레트(냉동)	0.3	
	0305510000	대구(건조)	0.3	
	0305620000	대구(염장,염수장)	0.44	
돔	0302694000	돔(신선,냉장)	1	
	0303794010	옥돔(냉동)	1	
	0303794090	돔기타(냉동)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대응 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돔(활어)	0301994090	돔,기타,활어	1	
명게	0307919031	우렁쉥이,종패용,산것	1	
	0307919039	우렁쉥이,기타,산것신선냉장	1	
	0307991920	우렁쉥이(냉동)	0.15	
	0307992930	우렁쉥이(건조)	0.15	
명태	0302691000	명태(신선,냉장)	1	
	0303791000	명태(냉동)	1	
	0304291000	명태의것,피레트(냉동)	0.3	
	0304991010	명태냉동연육	0.25	
	0304991090	명태,피레트나연육이외기타(냉동)	1	
	0305492000	명태(훈제)	0.25	
문어	0305593000	명태(복어(건조))	0.25	
	0307519000	문어기타,산것신선또는냉장	1	
	0307591010	문어(냉동)	1	
	0307591090	기타문어(냉동)	1	
	0307592000	문어(건조)	0.2	
미역	0307599000	문어(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이외기타)	0.35	
	1212202010	미역(건조)	0.1	
	1212202020	미역(염장)	0.2	
	1212202030	미역(냉장)	1	
	1212202040	미역(냉동)	1	
	1212202090	미역(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이외기타)	1	
민대구	0303780000	민대구(냉동)	1	
민어	0303799095	민어(냉동)	1	
바지락	0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냉장)	1	
	0307991130	바지락(냉동)	0.15	
	0307992130	바지락(건조)	0.2	
	0307993120	바지락(염장,염수장)	1.2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넣은것)	0.6	
뱀장어	0301929000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1	
	0302660000	뱀장어앵귤라종(신선,냉장)	1	
	0303760000	뱀장어앵귤라종(냉동)	1	
	1604191030	뱀장어(밀폐용기에넣은것)	0.3	
복어	0301999020	복어(활어)	1	
	0302699020	복어(신선,냉장)	1	
	0303799020	복어(냉동)	1	
	0305595000	복어(건조)	0.2	
붕어	0301999092	붕어(활어)	1	
붕장어	0301995000	붕장어(활어)	1	
	0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1	
	0303795000	붕장어(냉동)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대응 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0304191010	붕장어의것(피레트)-신냉	0.55	
	0304191020	붕장어의것(연육)-신냉	0.55	
	0304191090	붕장어의것(기타)-신냉	1	
	0304292000	붕장어의것,피레트(냉동)	0.55	
상어	03026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신선,냉장)	1	
	0303750000	곱상어와기타상어(냉동)	1	
	0305591000	상어지느러미(건조)	0.41	
새조개	0307911600	새조개(산것/신선,냉장)	1	
	0307991110	새조개(냉동)	0.1	
	1605901040	새조개(밀폐용기에넣은것)	0.1	
	1605902030	새조개(훈제)	0.15	
새치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신선,냉장)	1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간장과어란제외)냉동	1	
	0304111000	황새치(피레트)-신냉	0.3	
	0304112000	황새치(연육)	0.3	
	0304119000	황새치(피레트나연육이외기타,신냉)	1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피레트(냉동)	0.3	
	0304911000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냉동연육	0.3	
	0304919000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피레트나연육이외기타(냉동)	1	
아귀	0302699040	아귀(신선,냉장)	1	
	0303799091	아귀(냉동)	1	
오징어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1	
	0307491020	오징어(냉동)	1	
	0307492000	오징어(염장,염수장)	1.1	
	0307493000	오징어(건조)	0.2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넣은것)	0.4	
	1605902010	오징어(훈제)	0.17	
	1605909010	조미오징어	0.5	
우뭇가사리	1212206010	우뭇가사리(냉동)	1	
	1212206090	우뭇가사리(냉동이외기타)	1	
이빨고기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신선,냉장)	1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간장과어란제외)냉동	1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제외-냉동)	1	
	0304121000	이빨고기(피레트)-신냉	0.3	
	0304122000	이빨고기(연육)-신냉	0.3	
	0304129000	이빨고기(기타)-신냉	1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피레트(냉동)	0.3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제외한다)의것,피레트(냉동)	0.3	
	0304921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냉동연육	0.3	
	0304929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기타-냉동	1	
자라	0106202000	자라(산것)	1	
채첩	0307911910	채첩(산것/신선,냉장)	1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대응 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전갱이	0302697000	전갱이(신선,냉장)	1	
	0303797000	전갱이(냉동)	1	
	0305697000	전갱이(염장,염수장)	0.8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조제품)	0.2	
	1604191020	전갱이(밀폐용기에넣은것)	0.3	
젓새우	0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0.8	
정어리	0302610000	정어리(신선,냉장)	1	
	0303710000	정어리(냉동)	1	
	0305694000	정어리(염장,염수장)	0.8	
	1604131000	정어리(밀폐용기에넣은것)	0.7	
	1604139000	정어리(통조림외조제품)	0.2	
조기	0303796000	조기(냉동)	1	
	0305594000	조기(굴비-건조)	0.7	
	0305696000	조기(염장,염수장)	0.8	
조피볼락	0303799070	볼락(적어포함(냉동))	1	
청어	0302400000	청어(신선,냉장)	1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냉동	1	
	0305420000	청어(훈제)	0.25	
	0305610000	청어(염장,염수장)	0.8	
	1604121000	청어(밀폐용기에넣은것)	0.65	
	1604129000	청어(통조림외조제품)	0.2	
키조개	0307911700	개아지살(산것/신선,냉장)	1	
	0307991140	개아지살(냉동)	1	
	0307992120	개아지살(건조)	0.2	
피조개	0307911590	피조개,기타(산것신선냉장)	1	
	0307991150	피조개(냉동)	0.1	
해삼	0307919020	해삼(산것,신선,냉장)	1	
	0307991910	해삼(냉동)	0.2	
	0307992920	해삼(건조)	0.25	
	0307993920	해삼(염장,염수장)	0.8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0.3	
홍어	0303799093	홍어(냉동)	1	
홍합	0307310000	홍합(산것/신선,냉장)	1	
	0307391000	홍합(냉동)	0.15	
	0307392000	홍합(건조)	0.25	
	0307399000	홍합(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이외기타)	1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넣은것)	0.65	
	1605909040	홍합(자숙)	0.65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해당되는 항목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의 생산현황	농업인 []	어업인 []	농업법인 []	어업법인 []	생산자단체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12년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	--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신청품목</th> <th style="width: 15%;">소재지(시·군, 읍·면, 리·동)</th> <th style="width: 10%;">지번</th> <th style="width: 10%;">지목</th> <th style="width: 10%;">면적(m²)</th> <th style="width: 10%;">생산기간</th> <th style="width: 10%;">생산규모(m²,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신청품목	소재지(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²)	생산기간	생산규모(m ² ,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면허등 번호
	신청품목	소재지(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²)	생산기간	생산규모(m ² ,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m ² ,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업등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어업 :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2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 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지역축협조합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내역 서류,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구확인서
 - ⑥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발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성 방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시·군·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를 기재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를 기재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생산지의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지역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 (㎡)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 서식]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지역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통수 또는 어장면적 (㎡)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신청 지역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농업 등)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m ²)	생산지 이용면적(m ²)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m ²)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호의5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지역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 (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		확인 기관	관내 생산	
	관외 생산			관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③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대상 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지급 신청 총액 = 지급 대상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 단가)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 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3) 지원 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4) 지원 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 ○읍·면·동)							관리 번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신청일	신청 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규모(m ² ,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신청 내역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지급규모 (m ²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과거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지급규모 (m ²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성명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지급기준 *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 면적(㎡), 마리 또는 생산량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13년도
폐업 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



목 차

공통 분야 사업시행지침	133
원예·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153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173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191
별표	209
별지 서식	215

공통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공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안용덕 사무관 유원상	044-201-1711 044-201-1719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폐업 지원율(%)	90	-	-	-	'13.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6
합계	3,523	300	300	300	1,740
국고	3,523	300	300	300	1,74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필요시 시·군·구가 별도 고시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용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농업등)

$$\text{철거·폐기 면적} \times \text{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times 3\text{년}$$

* 축산물의 경우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수산물의 경우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참조

가. 철거·폐기 면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의 의미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폐기 여부와 무관하다.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3. 12월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 시달 시기 : 2012. 12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농업등) * 어업등의 경우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 농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13. 11월)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3.7~9월)
- 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 사. FTA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물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아.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임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3. 9. 15.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3. 11. 15.까지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4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도 폐업 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4.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13.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식품부, 4월) · 폐업지원금 요건 조사·분석(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농식품부)
↓		
②사업신청	('13.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어업인등) ·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③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3.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신청지,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어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④연차별계획수립	('13.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 및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시·도)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		
⑤자금 요청 및 배정	('1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2013년도 자금 배정 요청(시·도) · 자금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		
⑥지원금 지급	('1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시·군·구→농어업인등) ·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어업인등→시·군·구) ·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원예 · 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원예·특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총괄)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정락	044-201-2251 044-201-2254
	(과수)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정락	044-201-2251 044-201-2254
	(채소)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특작)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황신구	044-201-2231 044-201-2240
	(화훼)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휴현	044-201-2251 044-201-2261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폐업 지원율(%)	90	-	-	-	'13.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6
합 계	3,523	300	300	300	1,740
국 고	3,523	300	300	300	1,74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 (1)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필요시 시·군·구가 별도 고시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용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

$$\text{철거·폐기 면적} \times \text{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times 3\text{년}$$

가. 철거·폐기 면적(과수품목 제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의 의미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폐기 여부와 무관하다.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나. 철거·폐기 면적(과수품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철거·폐기한 면적과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 * 과수의 범위 : 포도, 감귤, 키위, 체리
-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 다만,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 고
포 도	100주/10a	올타리식
	66주/10a	평덕식
감 굴	83주/10a	소식재배
	150주/10a	밀식재배
키 위	22주/10a	소식재배
	40주/10a	밀식재배
체 리	27주/10a	소식재배
	100주/10a	밀식재배

예1) 50주가 재식된 2,000평 밀식재배 체리 과원 폐업시 : 폐업지원대상면적(1,000평)
 = 실제면적(2,000평) × 실제재식주수(50)/표준재식주수(100)

예2) 100주가 재식된 1,500평 평덕식 포도 과원 폐업시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아 실제면적 1,500평을 폐업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다만, 감굴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 중인 감굴재배관리시스템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재식주수를 확인하고, 감굴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등의 경우는 현장 확인 방법을 활용한다.

다.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3. 12월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2. 12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농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13. 11월)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3.7~9월)

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사. FTA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아.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3. 9. 15.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3. 11. 15.까지

-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 보고 시기 : 2013.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4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도 폐업 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4.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총괄) 축산정책과	과 장 남태현 사무관 홍인기	044-201-2311 044-201-2315
	(한육우)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양돈·양봉)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236
	(낙농)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40
	(닭·오리)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8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폐업 지원율(%)	90	-	-	-	'13.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6
합 계	3,523	300	300	300	1,740
국 고	3,523	300	300	300	1,74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 (1)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철거·폐기의 의미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판매 등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폐기 여부와 무관하다.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사육 면적 및 규모 등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자

구분	축종	규모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봉군 기준 :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10,000마리(소비4매) 이상을 하나의 봉군으로 본다

-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필요시 시·군·구가 별도 고시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용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

구 분	산출 공식
일반기준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낙 농	농가별 평균 납유량 × 연간 ℓ당 순수익액 × 3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 × 마리당 연 평균 순수익액 × 3년
양 봉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액 × 3년

- 가. 일반기준의 출하 마릿수,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 및 양봉의 사육 봉군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봉군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회전율을 곱하여 산출
 - * 축종별 회전율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때 고시 내용에 해당 축종의 회전율을 명시
- 나. 농가별 평균 납유량 : 납유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농가 개별 실적으로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납유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납유량
- 다. 연간 마리(ℓ, 부산물)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마리(ℓ, 부산물)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에 따른 사육규모별 마리당 조수입(粗收入)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이자를 뺀 금액(단,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마리당 순수익액

- ③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중 생산성과 상품성 등이 현저히 낮은 개체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되거나 사육되지 않는 개체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3. 12월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 시달 시기 : 2012. 12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관련 증명서, 농축협외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농축협과의 계약서류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축사 또는 지주의 확인서, 축사 또는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축사 또는 토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13. 11월)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3.7~9월)
- 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 사. FTA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아.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임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3. 9. 15.까지) → 농림수산물부장관(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3. 11. 15.까지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4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도 폐업 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4.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 지침서(수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과 장 양동엽 서기관 권오정	044-201-2851 044-201-2859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0	'11	'12		
폐업 지원율(%)	90	-	-	-	'13.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2016
합 계	3,523	300	300	300	1,740
국 고	3,523	300	300	300	1,740

II

201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 선정 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필요시 시·군·구가 별도 고시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평균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⑧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 * 다만, 어촌계 구성원 또는 지분을 보유한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어업면허 전체에 대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지원 기준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 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의 기준에 따른다

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text{<평년 수익액} \div \text{연리(12퍼센트)}\text{>} + \text{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text{<평년 수익액} \times \text{3년}\text{>} + \text{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평년 수익액의 의미 및 기타 산출 방법 등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참고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3. 12월

-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달 시기 : 2012. 12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조사·분석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어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의 관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절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어업면허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다.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 어촌계 구성원 또는 지분을 보유한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2013년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13. 11월)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 선박
 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어선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마. FTA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아.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3. 9. 15.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9.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3. 11. 15.까지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산 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어선·어구·시설 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인도받은 어선·어구·시설 등의 처리를 사진 촬영)

- (5)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 :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어구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6)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어업인들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3. 12월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포획·양식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농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IV

2014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직후

2. 2014년도 사업 추진 및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수립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도 폐업 지원계획 보고 및 자금 배정을 '14.1월까지 요청하고,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별 표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사비육시설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역관리	장비 5년 시설 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13년 신규)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과수·원예 분야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경영	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경영	10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원예경영	10년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13년신규)	원예경영	10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원예경영	8년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원예산업	1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산업	5~20년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기관 등 주요선박시설 : 10년 - 기타 기구 및 장비 : 5년	원양정책	5년~10년
	활어운반선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수출진흥	5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12년 신규) -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양식산업	5년~10년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축산)			
	한우농가조직화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농업등)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⑤ 기타	조건 불리지역 우선
지역 조건 (경사도)	① 50도 이상 ② 40~49도 ③ 30~39도 ④ 20~29도 ⑤ 10~19도 ⑥ 10도 미만 ⑦ 평지	
폐업 규모	① 0.1~0.5ha ② 0.5~1.0ha ③ 1.0~5.0ha ④ 5ha 초과	소규모 우선
관련 장비 (운송)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트럭 ④ 기타	보유 장비가 적을수록 우선지원
관련 장비 (농약)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무기 ③ 승용분무기	
품질 관리 (품질인증)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 유기	품질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품질 관리 (저온저장)	① 무저온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조직화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축산)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하천, 주거지 등과 가깝거나 환경보전구역에 위치하여 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어업)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① 원양 ② 근해 ③ 연안(어선) ④ 연안(맨손 등) ⑤ 해면양식 ⑥ 내수면어로 ⑦ 내수면양식	영세어업 우선
지역 조건	① 육지에서 20km 이상 ② 육지에서 10~20km ③ 육지에서 5~10km ④ 육지에서 0~5km ⑤ 육지부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어선 2톤 미만 ② 2~5톤 ③ 5~10톤 ④ 10~20톤 ⑤ 20~50톤 ⑥ 50톤 이상 ① 어장 0.1ha 미만 ② 0.1~0.5ha ③ 0.5~1ha ④ 1~2ha ⑤ 2~5ha ⑥ 10ha 이상	소규모 우선
품목의 생산 비중	① 80% 이상 ② 60~80% ③ 40~60% ④ 20~40%	해당 어업(업종)의 생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어가 ② 어촌계 개별출하 ③ 어촌계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의1 서식] (FTA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군·읍·면·리·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 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작성 방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4. 철거·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시·군·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품목	업종
	면허등 번호	연간 생산량(kg)
	어선·어구·시설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촌계 구성원 동의서 등(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신청인란은 어선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3.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4.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의 면허·허가·인가 등의 번호를 적습니다.
5.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
6. 어선·어구·시설물란은 어선명 및 어선 톤수, 어구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각각 적습니다.
7. 생산지역란은 주 조업구역(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적습니다.
8. 생산기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생산지 소재지 (또는 어업 등록 사항)	폐업면적 (㎡) 또는 어선톤수	생산지 이용면적 등(㎡, 톤)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또는 어업등록사항)		생산면적(㎡) 등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생산면적을 산출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3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 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3) 지원 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4) 지원 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산지 주소	유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시·도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 1. 성명 :
- 2. 주민등록번호 :
- 3. 주소 :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면적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사유

-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물부 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9호 서식]

폐업 지원 관리 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폐업 지역					폐업 면적 등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원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실적	실적율
지원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성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